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1월 2일

조례 제1605호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월정수당은 2,089,870원으로 한다.

제7조의1을 제7조의2로 한다.

제8조 중 "공무원의 예"를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한다.

별표3을 삭제한다.

별표1과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개정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19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② (생략)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단, 월 단위가 아닐 경우는 일할 계산으로 지급한다. <신설 96.04.30, 개정 2006.05.10., 2017.01.02>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월정수당은 2,089,870원으로 한다. ----------.
제7조의1 (생 략)	제7조의2 (현행 제7조의1과 같음)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산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8조(준용) ----------공무원 여비규정----.

신·구 별표대비표

[별표3]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제3조제3항 관련)

현 행	구 분	지 급 액
	2018년	2,036,910원
개 정	삭 제	

[별표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제7조제1항 관련)

현 행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의 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고 : 1. 의회 소재지내에서 출장 및 여행(동일 시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이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 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개 정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의 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별표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제7조제2항 관련)

현 행

(단위 : 미 달러화($))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철도임 ·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선임 ·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1등 정액	실비액	가등급 35 나등급 35 다등급 35 라등급 35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140	170	195
의 원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등 정액		가등급 30 나등급 30 다등급 30 라등급 30	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	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	130	156	180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마드리드, 동경, 홍콩, 모스크바

나. 나등급

(1) 아세아주·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싱가폴, 대만, 북경, 하노이

(2) 남·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자메이카

(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크, 체코

(4) 중동·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우간다, 코트니보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다. 다등급

(1) 아세아주·대양주 : 인도, 터어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지아,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3) 유럽주 : 아일랜드, 포르투갈, 회랍,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4) 중동·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

라. 라등급

(1) 아세아주·대양주 : 미얀마, 스리랑카, 휘지, 네팔, 몽골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수리남

(3) 유럽주 : 해당국가 없음

(4) 중동·아프리카주 : 레바논, 예맨,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개 정

(단위 : 미 달러화($))

구분	항공운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의 장 부의장	1등 정액	가등급 35 나등급 35 다등급 35 라등급 35	가등급 223 나등급 160 다등급 130 라등급 85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의 원	2등 정액	가등급 30 나등급 30 다등급 30 라등급 30	가등급 176 나등급 137 다등급 106 라등급 81	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

비고 : 준비금은 실비로 한다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1월 2일

규칙 제666호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숙직근무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단서조항의 숙직근무자의 휴무일 선택에 관한 규정은 2019년 1월 1일 근무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시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숙직근무자의 휴무) ------ 다만, 숙직근무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군산시 공고 제2019-2호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 중 이·통장 선발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안 별첨]

선발방법	변경(안)	비고
임명방법	- 읍면동장 직권 임명 현실적으로 주민총회 개최가 어려운 동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 연서(해당 이·통 세대수의 1/3)를 받아 신청서 제출 후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명	
임기(연임)	- 임기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장기 연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임기 3년, 연임 1회에 한하도록 규칙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우)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총무과 (☎ 063-454-2245, FAX 454-2227)
- 전자우편 : freshnis@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시정계 (☎ 063-454-22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O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와 「군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와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를 “지원절차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통장 지원자는 해당 리·통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 연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하는 주민은 19세 이상 자로서 세대별 1명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적임자를 직권으로임명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조의 절차에 의하여”를 “1회에 한하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와 「군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와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2조(이·통장의 임명) ① 이·통장은 관할구역 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신설된 리·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중에서 리·통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애향심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봉사정신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25세 이상인 자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제2조(이·통장의 임명) ① ---------- 지원절차를 거쳐 ----------.
②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제1항을 준용하여 임명한다.	② 이·통장 지원자는 해당 리·통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 연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하는 주민은 19세 이상 자로서 세대별 1명으로 한다.
<신 설>	③ 이·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적임자를 직권으로 임명한다.
제4조(이·통장의 임기) ①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2조의 절차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이·통장의 임기) ① ---------- 1회에 한하여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19-5호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군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문화기반시설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역사관의 명칭 · 위치 · 기능,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3조)

○ 역사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및 관람료 규정함(안 제4조 ~ 7조)

○ 역사관의 관람금지, 행위의 제한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9조)

○ 관람자의 변상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 역사관의 위탁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 15조)

○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16조 ~ 23조)

○ 유물의 취득 및 관리, 소장품 대여에 대해 규정함(안 제24조 ~ 26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19. 1. 2. ~ 2019. 1. 22.(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도시재생과(우)54078
(☎ 063-454-3543, FAX:451-4281)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계(☎ 063-454-35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는 아래와 같다.

1. 명 칭: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이하“역사관”이라 한다)
2. 위 치: 군산시 금광동 165-8번지 외 1필지
3. 기 능: 일제강점기 관련 유물 전시, 교육 및 홍보 등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4. “성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6. “전시물”이란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7. “소장품”이란 역사관이 소유하는 유물·자료 등을 말한다.

제2장 관람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역사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역사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3. 1호, 2호 휴관일 이외에도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 할 수 있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역사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 해 2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은 역사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① 역사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관의 전시물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역사관 측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제7조(무료관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3.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유물, 자료의 기증 등 역사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6. 6세 이하 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7.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 등록자
8. 기타 시장이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하게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
3. 위험물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타 공공질서・안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역사관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및 흡연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 및 관리

제11조 (운영 · 위탁관리)

① 역사관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 관리한다. 다만, 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은 유물 기증자, 기탁자 등이 소속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역사관의 관리 ·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의해 결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역사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운영비 충당을 위해 수탁자는 관람료 징수가 가능하다. 다만, 운영비를 초과하는 관람료 수입은 정산하여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정지 및 취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는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협약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 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
4. 역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기타 공익저해 등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시설물관리)

① 수탁자는 관할 구역 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역사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 할 수 없고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역사관의 관리운영 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역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위원회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시장과 역사관담당국장, 역사관장은 당연직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군산관련 역사, 문화, 고고학, 민속학, 근대역사문화 전문가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문화계·지역인사
3. 그 밖에 역사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역사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역사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시품의 기증, 구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할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때
4. 역사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 등을 초래하였을 때

제23조(위원수당)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유물의 취득 및 관리 등

제24조(유물의 감정) ① 시장은 역사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유물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정위원이 자필 서명한 유물감정결과는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정위원은 해당 유물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재전문위원, 역사학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외부 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 따라 준용한다.
④ 유물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유물의 구입과 기증 등의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유물의 기증 등) ① 시장은 보존, 전시,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 대여, 위탁관리,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물을 기증, 위탁관리, 관리전환 등을 한 자에게 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증한 자의 보상금 지급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은 감정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26조(소장품 대여) ① 소장품은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 대여·열람·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여 할 수 있다.
1.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전시관 및 전시 공간
2. 상호 교환 전시의 경우 국립, 공립, 대학 역사관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7장 보칙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 람 료 (제6조 제1항 제1호와 관련)

(단위: 원)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1,000	700	
청소년,군인	700	400	
어 린 이	500	300	

【별표 2】

관람료 감면 (제6조 제1항 제3호와 관련)

【 군산시민 관람료 감면 】

○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

(단위: 원)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500	300	
청소년,군인	300	200	
어 린 이	200	100	

【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 】

○ 국가시책에 따른 공공시설 입장 시 각 사업별 별도 할인율 적용

군산시 고시 제2018-162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상평초)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폐지)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21일

군 산 시 장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폐지)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46	상평초교	초등학교	옥구읍 상평리 501 일원	12,320	감 12,320	-	2009.11.01	

2.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게재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8-167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 12. 21.

군산시장 (인)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성명(법인명)	전라북도지사(교통물류도로과장)		
하천명칭	고척천	하천등급	지방 2급 하천
점용장소 점용목적	○ 전북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1159-2번지 외 15필지 ○ 대야~임피간 지방도확포장공사 보덕교 가설		
점용면적	일시점용 1,564㎡ / 영구점용 1,064㎡		
최초허가일	2018년 12월 10일		
점용기간	일시점용 : 2018년 12월 10일 ~ 2023년 12월(공사준공일) 영구점용 : 2023년 12월(공사중공일) ~ 영구		

군산시 고시 제2018-170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항만)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소룡동 1668번지 도시계획시설(항만)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소룡동 1668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나. 명 칭 : 군산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사업면적 : 35,178.3㎡
   나. 사업규모 (부속건물 증축 및 용도변경)

구 분	변경전				변경후			
	구 분	층 별	면 적(㎡)	용 도	구 분	층 별	면 적(㎡)	용 도
층별 및 동별개요	주 1	1 층	3,847.22	운수시설(국제여객터미널)	주 1	1 층	3,847.22	운수시설(국제여객터미널)
			117.59	제2종근생(일반음식점)			117.59	제2종근생(일반음식점)
		2 층	2,802.55	운수시설(국제여객터미널)		2 층	2,774.17	운수시설(국제여객터미널)
			450.57	제2종근생(일반음식점)			450.57	제2종근생(일반음식점)
							28.38	**제1종근생(소매점)**
		3 층	238.06	운수시설(국제여객터미널)		3 층	238.06	운수시설(국제여객터미널)
	주 2	1 층	925.12	운수시설(국제여객터미널)	주 2	1 층	842.76	운수시설(국제여객터미널)
							82.36	**제1종근생(소매점)**
	주 3	1 층	132	운수시설(창고)	주 3	1 층	132	운수시설(창고)
	주 4	1 층	228	운수시설(국제여객터미널)	주 4	1 층	228	운수시설(국제여객터미널)
					부 1	**1 층**	**20**	**(전기실) - 증축**
					부 2	**1 층**	**3**	**(비상발전기실) - 증축**
	합 계		8,741.11	운수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합 계		**8,764.11**	운수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4.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길 11, 1층

나. 성 명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 ~ 2019. 11.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읍면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군산시 소룡동	1668	대	35,178.3	35,178.3	국	-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8-171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대로2-25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25호선)사업에 대하여 군산시 고시 제2013- 79(2013.6.28.)호로 최초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산북동 2596-1번지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25호선)사업
   나. 명 칭 :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변경없음)

구분	노 선 명	시설결정		실 시 계 획 인 가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	
도로	대로2-25	30	3,224	30	3,224	96,761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가.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나. 성 명 : (당초)군산시장(공영사업과)→(변경)군산시장(도시계획과)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사업기간 : (당초)2013. 6. 28.~2018. 12. 31. → (변경)2013. 6. 28.~2019. 6. 30.
   나. 변경사유 :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준공예정일 변경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관계도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8-172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중로1-101호 외)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01호선 외 1개소)사업에 대하여 군산시 고시 제2013-80호(2013.6.28.) 및 군산시 고시 제2015-51호(2015.3.27.)로 최초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옥서면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752-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01호선 외 1개소)사업
   나. 명 칭 : 옥서면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구분	노 선 명	시설 결정		실시계획 내용			비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	
도로	중로1-101	24	1,116	24	1,116	28,455	
도로	중로1-102	24	340	24	340	8,571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가.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나. 성 명 : (당초)군산시장(공영사업과)→(변경)군산시장(도시계획과)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사업기간 : (당초)2013. 6. 28.~2018. 12. 31.→(변경)2013. 6. 28.~2019. 6. 30.
   나. 변경사유 :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준공예정일 변경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관계도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8-173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호선) 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3-14호(2013.08.30.)로 최초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호선)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군산시 남북로사거리~미장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호선)사업
   나. 명 칭 : 공단대로 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구분	노선명	시설결정		기개설		금회 실시계획 인가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도로	대로1-1	35	5,500	23~35	5,500	5~17	700.3	미개설 도로폭 확장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13. 8. 30. ~ 2018. 12. 31. → **(변경) 2013. 8. 30. ~ 2020.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관계도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8-174호

군산 근린공원(페이퍼코리아지구 근린공원 1개소)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군산 근린공원(페이퍼코리아지구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관련도서를 군산시청 산림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8년 12월 27일

Ⅰ. 도시계획시설(페이퍼코리아지구 근린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34	제34공원	근린공원	조촌동 2	-	27,530	27,530	군산고141 (14.12.26)	-
변경	34	제34공원	근린공원	조촌동 2-33, 41	-	27,530	27,530	-	지번정정

Ⅱ. 도시계획시설(페이퍼코리아지구 근린공원) 결정조서

1. 조성계획 결정 조서(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7,530.00**	**10,413.26**	**1,266.52**	**3,166.52**	**104**	
기반시설	소 계	5,148.76	5,148.76	-	-	-	
	도로 및 광장	5,148.76	5,148.76	-	-	-	
조경시설		20.49	20.49	-	-	-	
휴양시설		-	-			29	
유희시설		992.09	992.09	-	-	13	
운동시설		358.71	358.71	-	-	11	
교양시설		2,045.00	2,045.00	1,200.00	3,100.00	1	도서관 예정
편익시설		1,848.21	1,848.21	66.52	66.52	4	
관리시설		-	-	-	-	46	
녹지		17,116.74	-	-	-	-	
공원시설율(%)		37.82					법정 40% 이하
공원녹지율(%)		62.18					법정 60% 이상

2.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7,530.00**	**10,413.26**	**1,266.52**	**3,166.52**	**104**	
기반 시설	**소 계**		**5,148.76**	**5,148.76**	**-**	**-**	**-**	
	도 로		3,612.98	3,612.98	-	-	-	
	가	진입광장	1,160.11	1,160.11	-	-	-	
	나	진입광장	375.67	375.67	-	-	-	
조경 시설	**소 계**		**20.49**	**20.49**	**-**	**-**	**-**	
	①	조형가벽	20.49	20.49	-	-	-	
휴양 시설	**소 계**		**-**	**-**	**-**	**-**	**29**	
	②	등의자	-	-	-	-	29	
유희 시설	**소 계**		**992.09**	**992.09**	**-**	**-**	**13**	
	다	놀이터	992.09	992.09	-	-	-	
	③	조합놀이기구	-	-	-	-	2	
	④	모험놀이기구	-	-	-	-	4	
	⑤	단위놀이기구	-	-	-	-	5	
	⑥	파고라A	-	-	-	-	2	
운동 시설	**소 계**		**358.71**	**358.71**	**-**	**-**	**11**	
	라	운동공간	358.71	358.71	-	-	-	
	⑦	체력단련시설	-	-	-	-	8	
	⑧	파고라B	-	-	-	-	1	
	⑨	야외탁자	-	-	-	-	2	
교양 시설	**소 계**		**2,045.00**	**2,045.00**	**-**	**-**	**1**	
	마	도서관	1200.00	1200.00	1,200.00	3,100.00	-	
	바	철도길	609.86	609.86	-	-	-	
	사	야생체험장	235.14	235.14	-	-	-	
	⑩	안내판	-	-	-	-	1	
편익 시설	**소 계**		**1,848.21**	**1,848.21**	**-**	**-**	**4**	
	아	주차장	1,613.83	1,613.83	-	-	-	
	자	화장실	234.38	234.38	66.52	66.52	-	
	⑪	자전거보관대	-	-	-	-	4	
관리 시설	**소 계**		**-**	**-**	**-**	**-**	**46**	
	⑫	공원등	-	-	-	-	43	
	⑬	공원안내판	-	-	-	-	2	
	⑭	경계휀스	-	-	-	-	1	
녹지	**소 계**		**17,116.74**	**-**	**-**	**-**	**-**	
	녹 지		17,116.74	-	-	-	-	

3.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1,324.49**	**3,612.98**				
산책로	소 계			1324.49	3612.98				
	-	1	3.3	295.95	1055.18	산책로	광장-가	광장-나	
	-	2	3.3	240.03	863.35	산책로	광장-가	광장-나	
	-	3	2.3	253.29	585.57	산책로	광장-가	광장-나	
	-	4	5.3	9.73	53.52	산책로	진입로	산책로3-3	
	-	5	2.5	60.40	151.24	산책로	북측입구	산책로3-1	
	-	6	2.3	99.00	331.40	산책로	북측입구	운공공간-라	
	-	7	2.3	90.45	230.93	산책로	철도길-바	산책로3-2	
	-	8	1.2	103.35	126.90	산책로	광장-가	산책로3-5	
	-	9	1.2	68.70	85.00	산책로	산책로3-5	산책로3-1	
	-	10	1.2	103.59	129.89	산책로	산책로3-1	산책로3-2	

Ⅲ. 도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도면 : 게재 생략

※ 군산시 산림녹지과(063-454-2980)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군산시 고시 제2019-1호

군산시 건물번호판 제작 수수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6조(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에 따라 건물 소유자 부담으로 건물번호판 제작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 2.

군 산 시 장

○ 결정기준일 : 2019년 1월 2일

○ 적용기간 : 2019. 1. 2 ~ 12. 31.(1년간)

○ 건물번호판 제작 수수료

- 길급 : 6,100원
- 로급 : 12,100원

○ 납부방법 : 군산시 수입증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9-5호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군 산 시 장

다 음

1. 2019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2. 201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별도 붙임
   ※세부내용은 군산시청 세무과에 비치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고시 제2018-260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27.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개정면 통사리 임대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변경없음
   가. 명칭 및 대표자 : ㈜진경건설 대표이사 진선광
   나.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342, 407호(나운동 동아26빌딩)
3. 시공자 : 변경없음
   가. 명칭 및 대표자 : ㈜진경건설 대표이사 진선광
   나.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342, 407호(나운동 동아26빌딩)
4. 사업내용 : 사업기간 변경
   가. 사업위치 :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217번지
   나. 주택구분 : 공공건설임대주택
   나. 대지면적 : 20,936.0000㎡
   다. 건축면적 : 4,396.4715㎡
   라. 연 면 적 : 67,057.2220㎡

   마. 건축규모 : 아파트 6동 17~25층, 492세대

- 전용 59.7246㎡ 180세대
- 전용 84.4755㎡ 88세대
- 전용 84.9562㎡ 134세대
- 전용 84.5076㎡ 90세대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사. 사 업 비 : 68,840,954천원

아. 사업기간 : 2015.07.03. ~ 2019.06.30.

5. 주요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5. 07. 03. ~ 2018. 12. 31	2015. 07. 03. ~ 2019. 06. 30	

6.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8년 12월 26일

7. 기타 자세한 사항의 서류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8 - 260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27.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군산 디오션시티 A4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명 칭 : ㈜디오션시티쓰리
   나. 대 표 자 : 권육상
   다. 주 소 :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3. 사업내용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2-31번지외 2필지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다. 대지면적 : 43,781㎡
   라. 건축면적 : 7,115.8381㎡(건폐율 : 16.25%)
   마. 연 면 적 : 146,798.4157㎡ (용적율 : 248.01%)
   바.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29층 /아파트 7개동외 977세대
   사.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비고
계		977				
59A	민영주택	172	59.9973	19.6827	79.6800	
59B	민영주택	58	59.9994	20.0511	80.0505	
84A	민영주택	495	84.9932	25.4429	110.4361	
84B	민영주택	81	84.9911	26.5339	111.5250	
103	민영주택	112	103.9945	30.4188	134.4133	
118	민영주택	56	118.9992	34.1701	153.1693	
145	민영주택	3	145.9995	44.1375	190.1370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271,789,345천원

차. 사업기간 :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

5. 설계도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설계도서와 같음

6. 사업계획승인일 : 2018.12.26.

7.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